

음악대학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지침

제정 2002. 9. 1.
개정 2003. 3.14.
개정 2004. 3.27.
개정 2006. 9. 1.
개정 2008. 3. 1.
개정 2012.10. 4.
개정 2015. 9. 3.
개정 2016. 2.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규정」 및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신규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등에 따라 음악대학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자격) ① 음악대학 전임교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음악대학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별표)이 있는 사람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음악학(이론)분야 전임교원의 자격기준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에 한한다.

제3조(채용원칙) 전임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탁월한 업적이 인정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제4조(심사항목 및 비중)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각 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둘째자리로 반올림한다.

1. 기초 및 전공심사(50점)
 - 가. 지원자격 충족여부
 - 나. 전공과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적부)
 - 다. 연구실적물의 내용(30점)
 - 라. 총괄연구업적(20점)
2. 면접심사(50점)
 - 가. 공개발표(오디션) 또는 공개강좌(공개실기지도)(30점)
 - 나. 자기소개서와 교육 및 연구계획서(10점)

다. 임용적합성(10점)

제5조(연구실적물의 범위 및 인정 점수 등) ①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범위 및 인정점수는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 규정」 제13조를 따른다. 다만, 동 규정 제13조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는 편저서 및 박사학위논문만 인정한다.

② 미발표 연구실적물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발표 작품(작곡), 논문 및 저서에 한하여 임용예정일 60일 이전까지 발표(게재)될 것임을 증명하는 발표(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발표·출판된 연구실적물은 제출한 연구실적물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한다(추가, 삭제, 수정 불인정).

③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은 지원 마감일이 속하는 월 기준 3년 이내에 발표된 것에 한하며, 인정점수 200점이상, 제출편수 3편이하이어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 ① 박사학위 논문 또는 실기 지도교수(최종학위가 석사인 경우에는 석사학위 논문 또는 실기 지도교수), 공개채용지원추천자,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공동연구자 등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다.

② 기초 및 전공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장이 지명한다.

1. 학장은 학과장(전공주임)으로부터 학내인사와 학외인사를 구분하여 각기 2배수 내외의 후보자를 추천 받아 5인을 지명하되, 학외인사 2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2.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임용후보자 예정 직급 이상인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학문적 업적과 교육 경험이 풍부한 관련 학외인사 중에서 선정한다.

③ 면접 심사위원(임용적합성 제외)은 학과장(전공주임)이 추천한 인사와 해당 학과(전공) 전임교원 중 학장이 5인 이상을 지명한다.

제7조(단계별 심사방법) ① 인사위원회는 지원자 전원에 대하여 제2조의 지원자격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 처리된 지원자에 대해서는 이후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② 기초 및 전공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전공과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 평가

가. 5인의 심사위원은 연구실적물 각 편에 대하여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한다.

나. 심사위원별 평균을 낸 후, 심사위원별 평균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3인의 평균이 2.0이상이면 적격으로 인정하고, 2.0미만일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하여 이후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2. 연구실적물의 내용 평가

가. 5인의 심사위원은 연구실적물 각 편에 대하여 그 내용을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 등급으로 평가하고, 각 실적물별 심사위원 평가 중 최고 및 최저등급 평가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평가를 평균한 것을 실적물의 내용평가 점수로 한다.

- 나. 연구실적물 중 내용평가 평균점수가 우수한 순서대로 200점 이상이 될 때까지의 실적물을 최종 평가대상으로 한다. 다만, 실적물의 내용평가 평균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인정점수가 높은 것부터 최종 내용평가에 반영한다.
- 다. 최종 평가대상 연구실적물 내용평가 평균점수가 4.0이상이면 적격으로 인정하고, 4.0미만이면 부적격 처리하여 이후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3. 총괄연구업적 평가

- 가. 5인의 심사위원은 총괄연구업적의 모집분야 적합성 및 질과 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최고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평가(유효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 나. 유효점수(최고점수와 최저점수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최대차가 9점 이상일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재평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연구실적물 심사결과 모집분야의 적합성 또는 내용평가 점수가 부적격일 경우는 재평가하지 아니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재평가를 결정한 경우 학장은 2인의 심사위원을 추가 지명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기존 3개의 유효점수와 합하여 최고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평가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③ 학장은 기초 및 전공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대 3배수의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학장은 학과장(전공주임)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면접심사를 진행하게 한다.

1. 공개발표 또는 공개강좌(이하 “공개발표”) 평가

- 가. 학과장(전공주임)은 일시 및 구체적 내용을 학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은 공개발표일 일주일 전까지 면접심사대상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 나. 심사위원은 3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그 중 최고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10인 이상일 경우는 최고 및 최저점수 각 2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2. 자기소개서와 교육 및 연구계획서 평가

- 가. 심사위원은 1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그 중 최고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유효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10인 이상일 경우는 최고 및 최저점수 각 2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유효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 나. 유효점수의 최대차가 5점 이상일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재평가여부를 결정한다.
- 다. 나목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재평가를 결정한 경우 학장은 적정수의 심사위원을 추가 지명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기존의 유효점수와 합하여 최고 및 최저점수 각 1개(심사위원이 10인 이상일 경우 2개)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3. 임용적합성 평가

- 가. 인사위원회는 면접심사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임용적합성 심사를 한다.
- 나. 인사위원회 위원은 각각 연구업적의 ‘국제적 위상’, ‘교육자로서의 자질’ 및 ‘윤리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그 중 최고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다. 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모집분야 학과장(전공주임)을 출석시켜 질의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심사위원이 면접심사 종료 전에 심사장을 이탈하거나, 공개발표 종료 즉시 학장에게 평가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심사위원의 평가는 심사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8조(임용후보자 및 임용예정직급 등의 결정) 인사위원회는 임용적합성 평가점수 7점 이상, 종합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사람 중 최고득점자를 임용후보자로 결정하며, 임용후보자의 교육 및 연구경력을 고려하여 임용추천직급 및 계약기간을 결정한다.

제9조(임용후보자의 추천) 학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임용후보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부칙(2002.9.1.)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의 음악대학 신규임용교수 공채에 적용한다

부칙(2003.3.14.)

이 규정은 2003년 3월 14일 이후의 음악대학 신규임용교수 공채에 적용한다.

부칙(2003.11.1.)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 이후의 음악대학 신규임용교수 공채에 적용한다

부칙(2004.4.1.)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 이후의 음악대학 신규임용교수 공채에 적용한다.

부칙(2004.10.11.)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1일 이후의 음악대학 신규임용교수 공채에 적용한다.

부칙(2006.9.1.)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일 이후 신규교수 채용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3.1.)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신규교수 채용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10.4.)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교원 신규 임용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9.3.)

이 지침은 2015년 9월 3일 이후 전임교원 신규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2.18.)

이 지침은 2016년 3월 1일 이후 전임교원 신규임용부터 적용한다.

별표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 및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

1. 박사학위 상응자격

다음과 같은 최고예술학위는 학술학위의 박사에 상응하는 자격으로 인정한다.

- (1) 콘체르트엑사멘 (Konzertexamen, 독일)
- (2) 아티스트 디플로마 (Artist Diploma, 미국)
- (3) 씨클 드 페르펙시온느망 (Cycle de perfectionnement, 프랑스)
- (4) (1)~(3) 이외에, 박사 또는 (1)~(3)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임을 국가기관에서 공증한 증명서를 학위 증명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2. 박사학위 상응업적

- (1) 음악대학 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전문연주단체에서 상임지휘자·악장·리더·수석주자로 통산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 (2) 음악대학 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국제음악콩쿠르 입상실적이 있는 경우(콩쿠르의 지명도 및 입상실적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함)
- (3) 대학 및 이에 상응하는 국내·외 교육기관의 전임교원으로 통산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모집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한 경우에 한함)
- (4) 석사학위 또는 디플롬 소지자로서 공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연구실적이 1,000점 이상인 경우 (연구실적의 인정기준은 서울대학교 예술-체육계 실기에 대한 연구실적물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함)